

구미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0.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 가. 공립박물관 설립 및 운영의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개정하여 상위법과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 나. 박물관자료 수집(구입, 기증, 기탁, 대여 등) 및 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박물관 개관 후 자료수집심의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유물’을 ‘자료’로 변경(제명, 안 제1조~제8조, 제11조~제14조)
- 나. 개관 후 자료수집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단서 삭제(안 제8조)

3. 조 례 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붙임)
-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를 “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박물관의 유물수집”을 “박물관자료 수집”으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 중 “유물을”을 각각 “자료를”로 한다.

2. “박물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자료를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유물을”을 “자료를”로, “유물과”를 “자료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물을”을 “자료를”로 한다.

제6조 중 “유물을”을 “자료를”로 한다.

제8조제1항의 단서를 삭제한다.

제12조제2항 중 “유물을 제외한 유물은”을 “자료를 제외한 자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물은 일반 유물과”를 “자료는 일반 자료와”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유물을”을 “자료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물이”를 “자료가”로 한다.

제2조제4호, 제2조제7호, 제2장 제목, 제3조 제목, 제3조 제목 외의 부분, 제4조 제목, 제4조제1항, 제4조제2항, 제5조 제목,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제5조제3항, 제5조제4항, 제6조 제목, 제3장 제목, 제7조 제목, 제7조제1항, 제7조제5항제1호, 제7조제5항제2호, 제7조제5항제3호, 제8조 제목, 제8조제1항, 제8조제6항제1호, 제8조제6항제2호, 제8조제6항제3호, 제8조제6항제4호, 제4장 제목, 제11조 제목, 제11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2조 제목, 제12조제1항, 제12조제4항, 제13조 제목,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제1호 중 “유물”을 각각 “자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구미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u>박 물관의 유물수집 및 관리</u> 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박 <u>물관자료 수집</u>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 <u>유물</u> ”이란 보존 및 전시가치 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무형 의 유산으로서 수집 또는 기 탁 등에 따라 박물관이 관리 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2. “ <u>박물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u> ”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u>제2조제3호의 자료를 말한다.</u>
3. “ <u>수집</u> ”이란 <u>유물</u> 을 구입, 기 증,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 전환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수장하는 것을 말한다.	3. ----- <u>자료를</u> ----- ----- -----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 <u>수장고</u> ”란 <u>유물</u> 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임시 또는 항 구적인 시설을 말한다.	5. ----- <u>자료를</u> ----- ----- -----.

6. “대여”란 유물을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빌려오거나 빌려
주는 것을 말한다.

7. (생 략)

8. “복제”란 유물을 촬영, 탁본,
모사 또는 모조 등을 하거나
이를 영상, 음향, 사진 등으로
이용하는 제반 사항을 말한다.

제4조(유물구입) ① 구미시장(이
하 “시장”이라 한다)이 유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야
별 유물평가위원회의 평가와 유
물수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구입대상 유물과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② 시장이 경매유물, 국가 또는
시·도지정문화재 및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유물을 공개구입
또는 현지구입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
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유
물수집심의위원회의 평가·심
의를 받아 구입할 수 있다.

제6조(유물기탁 등) 시장은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을 기
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6. ----- 자료를 -----

-----.

7. (현행과 같음)

8. ----- 자료를 -----

-----.

제4조(자료구입) ① -----
----- 자료를

----- 자료와 -----
-----.

② -----

----- 자료를 -----

-----.

제6조(자료기탁 등) -----
----- 자료를 --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유물수집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유물수집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유물수집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박물관을 개관한 경우에는 박물관운영위원회가 심의위원회를 대신한다.

② ~ ⑥ (생략)

제12조(유물의 관리) ① (생략)

② 전시 또는 대여해 준 유물을 제외한 유물은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유물은 일반 유물과 격리하여 보존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14조(변상담보 및 책임) ① 시장은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원조치나 변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여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보험의 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자료수집심의위원회) ① --

-----. <단서 삭제>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자료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자료를 제외한 자료는 -----.

③ ----- 자료는 일반 자료와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변상담보 및 책임) ① ---

--- 자료를 -----

-----.

② 시장은 유물이 고의 또는 과
실로 인하여 망실, 도난, 훼손
등이 되었을 때에는 행위자 등
에게 심의위원회가 정한 평가액
에 따라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② ----- 자료가 -----

-----.

관계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박물관자료"란 박물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무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사업)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박물관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
 2. 박물관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
 3. 박물관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4. 박물관자료에 관한 강연회·강습회·영사회(映寫會)·연구회·전람회·전시회·발표회·감상회·탐사회·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
 5. 박물관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6.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박물관자료·미술관자료·간행물·프로그램과 정보의 교환,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
- 6의2.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7.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12조(설립과 운영)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구미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 박물관 개관 후 자료수집심의위원회 운영 및 위원수당 지급에 따른 세출 발생(안 제8조, 제10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자료수집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수당 등의 비용이 연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내 용	산출내역	금액
합 계		3,000
자료수집심의위원회 위원수당	100,000원×10명×3회	3,000

※ 위원회 수당 산출근거 : 70,000원(기본) + 30,000원(2시간이상 초과)

4. 작성자

- 관광진흥과 학예연구사 박근아(054-480-2672)

소 관 부 서		관광진흥과
입 안 자	과 장	전 명 희
	담 당	류 정 임
	담 당 자	박 근 아 (480-2672)